

□ 사업목적

 태풍, 지진, 폭우 등 자연재해·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

□ 융자규모 : 4,500억원 내외

□ 신청대상

-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- (일시적 경영애로)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
- (매출감소 확인)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(연도, 반기, 분기, 월별) 비교를 통해 매출 10% 이상 감소여부 확인
-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-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⑤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
- ⑥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
- ⑦ 6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 폐업 또는 부도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
-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- (매출감소 확인 예외)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
-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⑤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소상공인
-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□ 융자범위

-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·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□ 융자조건

- ① 재해 소상공인
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- 대출한도 : 1억원*
 - 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- *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-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
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- 대출한도 : 7천만원*
 - *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- *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